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62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69911 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6271 판결

전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D 사이에 2017. 6.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77,621,05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621,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 1) 원고는 2016. 9. 29. 망 E와 보증금액 59,500,000원, 보증기간 2016. 9. 29.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망 E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2016. 9. 29. F조합과 7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 2) 망 E가 2017. 1. 29. 사망함에 따라 C, G, 피고가 각 망인을 상속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계 2017. 6. 28. 접수 제8661호로 2017. 1.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계 2017. 6. 28. 접수 제8662호로 2017. 6.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법원 등기계 2018. 11. 23. 접수 제13305호로 2018.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와 피고 등의 특별상속한정승인

- 1) 망 E와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4. 19. F조합에 59,890,1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망 E의 상속인들 중 G와 피고는 2019. 7. 2.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에 망 E를 피상속인으로 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위 법원 2019느단58호)을 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결과

1) 원고는 2019. 5. 7. 피고, C,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가단201027호로 피고 등이 망 E의 사망으로 상속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 각 20,117,66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4.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피고와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와 G가 특별상속한정승인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알지 못해 위 특별상속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 G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117,665원 및 그 중 각 19,963,393원에 대하여, C은 20,117,665원 및 그 중 19,963,393원에 대하여 각 201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D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계약에 따라 망 E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77,621,055원의 범위에서 위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의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77,621,0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망 E가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등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보증인 지위를 각 상속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등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구상금 채권을 획득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증여한 날인 2017. 6. 22. 이후에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위 증여일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망 E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상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 또한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라)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C이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C에게 채무초과상태가 야기되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이 D에게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D과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청구의 요건이 되는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데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24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사실 내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C에게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만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C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C의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면서 야기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C의 채무초과상태 및 이 사건 증여가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소송에서 피고와 G가 2019. 6. 17.경에서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어 피고와 G의 특별상속한정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바, 관련 소송의 판결 및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2) 또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만약 피고나 G가 C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았다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C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3)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번복되었고,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전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¹⁾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남 장흥군 전 754㎡
2. 전남 장흥군 목장용지 1884㎡
3. 전남 장흥군 동
경량철골조 스토틈지붕 단층축사 126㎡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축사 및 퇴비사 195.3㎡
부속건물
기타강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145.8㎡
4. 전남 장흥군 동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축사 및 퇴비사 720㎡
-이상-

1) 이처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인정되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 관해서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